글 _ 김운희(공인노무사)

외국인 고용 절차와 퇴직금 누락분의 지급여부

벤처기업 인사·노무 Q&A 시리즈 5

내국인 채용 못한 사업주에 한해 최장 3년까지 허용

Q 사무용품을 제조하는 기업의 사업주입니다. 이제 고용허가제가 실시되어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다는데 이 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A 그동안 외국 근로자들의 국내취업 수단이었던 산업연수생제가 불법체류를 양산하고,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비판이 따르자 그 대안으로 도입한 법제가 바로 고용허가제입니다. 2003년 7월 31일에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구체적인 실행과정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2004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등을 통해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국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주에 한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되고, 취업기간은 최장 3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는 1년마다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며, 고용허가제에 의한 취업기간이 단기간임을 감안하여 가족을 동반한 입국·취업은 금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업체의 휴·폐업, 사업자의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취업 알선을 통해 3번에 한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구직자의 선정·도입 업무는 우리나라와 송출국가 모두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며, 민간 송출회사는 이 과정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누락된 차액 받을 수 있어

Q 5년 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일부 평균임금 항목에서 누락된 부분을 지급받고 싶습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3년 후에는 위 차액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중간정산의 차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최종 퇴직 시에 총 퇴직금에서 이미 중간정산 받은 부분을 제하고 남은 차액만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는 것이고,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이 이미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2003.7.16, 임금 68207-560).

아울러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지급되었다면 그것은 일단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계산착오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계산착오가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 자체를 무효화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같은 취지 2002.7.24, 임금 68207-523), 5년 전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누락된 차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같은 취지 2001.8.17, 임금 68207-579).

〈문의 : 017-350-0155, E-mail : hrm@jalabor.com〉